

14 (第106回-第5次)

의안 번호	37	제안년월일 : 1998.7.16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 구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조상훈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98.7.16)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			
III. 제안이유			
여성 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문제를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유족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 확충 등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확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u>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u>			
의안 번호	38	제안년월일 : 1998.7.16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0거 지방자치발전과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조상훈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98.7.16)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			
III. 제안이유			

'91.7.8.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95.7.12.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98.7.9.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또한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出席議員 93人

李成浩	梁敬淑	崔明玉
金吉原	吳尙俊	張鎮國
柳辰永	羅鍾文	吳世根
任東淳	趙相勳	金泰潤
崔鍾德	劉俊相	朴正哲
崔鍾根	鄭泰宗	趙養鎬
金俊明	尹汝亨	朴來雨
朴洙桓	崔鍾午	張雲洙
李敬愛	崔忠敏	吉振
金興植	劉大運	高溶
李東秦	任安淳	花煥
金恩京	鄭在天	玉宰
林浩植	金永俊	德均
金浩源	朱世晚	九英
柳基洪	申炯植	彬洙
金喜甲	金寬洙	鎮震
盧永順	金鍾來	大漢
李英會	金平城	一拉
具哲善	金明洙	全京
徐興壽	金周喆	竹子
崔榮植	金種求	宋台
閔康珍	鄭韓福	李松
李鳳洙	金洙九	韓春子
黃乙秀	李馨九	
金成全	李喆鎬	
李海植	李容富	
李禮子	車星煥	
金善會	金魯珍	
吉基演	金聖泰	
	李健相	
	車元甲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副教育監

金相權